

## 블랭크의 품목분류가 왜 중요한가?

오수교 관세사·KPMG세정관세법인 고문

블랭크(반가공품)의 품목분류는 FTA 원산지물품의 인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4단위 호(CTH)나 6단위 소호(CTSH)의 변경기준으로만 된 경우에는 타국에서 블랭크(반가공품)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추가 가공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더라도 품목번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물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블랭크는 완성품과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되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블랭크와 관련된 품목분류규정과 각종 사례의 설명을 통하여 품목분류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합리적인 분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 블랭크(반가공품) 정의와 분류

「“블랭크(blank, 반가공품<sup>①</sup>)”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부분품<sup>②</sup>은 아니나 완성된 제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춘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제품이나 부분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HS 해설서 통칙 제2호가목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적합한 블랭크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별도의 규정이 없는) 완성된 제품이나 부분품과 함께 분류한다.

통칙 제2호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HS 해설서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sup>③</sup>되어 있지 않은 블랭크에도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예로서 다음을 소개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tube) 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형품(preform)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는 제품이다. 그 예로서 다음을 소개하고 있다.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하는 물품이다.(그림4의 가운데 페트병 블랭크 참조)

① 블랭크는 중간정도로 성형하였거나 또는 예비적으로 성형한 것이라 하여 “preform(중간성형품 또는 예비성형품)”이라고도 한다.  
 ② 블랭크로 만든 물품이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일 수도 있고, 특정 물품의 일부로 결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블랭크는 부분품을 만드는데 많이 이용된다.  
 ③ 제8212호(면도날에는 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와 제9606호(단추 블랭크)가 그런 호에 해당된다.

즉, 다음 그림1부터 그림4까지에서 가운데의 중간성형품이 블랭크에 해당된다. 이 블랭크는 좌측의 반제품(semi-manufacture)이나 원재료를 이용하여 블랭크로 만든 후에 추가 가공을 통하여 우측의 최종 제품(예: 그림4의 페트병)이나 부분품(예: 그림1의 볼트와 그림2의 골프 용 헤드)을 만들게 된다.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블랭크는 최종 제품이나 부분품과 같은 호(소호)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완성된 제품이나 부분품의 본질적인 형상을 갖추지 않은 봉·디스크·관 등과 같은 반제품(semi-manufactures)은 블랭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반제품은 일반적으로 구성 재료의 종류나 성분에 따라 분류하므로 제품이나 부분품과는 다른 호에 속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아래 그림에서 반제품에는 봉(bar and rod)·제재목(각목)·판(sheet)이나 스트립(strip)이 해당되며, 알갱이상태<sup>④</sup>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는 원재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블랭크라도 문맥상 달리 해석되면 그 규정을 따른다. 예를 들면 철강으로 만든 형강(形鋼)의 블랭크는 형강(제7216호·제7222호·제7228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반제품(제7207호·제7218호·제7224호)으로 분류토록 제72류 주 제1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천연코르크로 만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제4502호)는 완성된 마개용의 코르크 제품(제4503호)으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제4502호의 용어에 그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따라 주 규정과 호의 용어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④ 제39류의 주 제7호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을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하고, 반제품(semi-manufacture)이나 제품(article)과는 품목번호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관세율표에서 이 기준은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다른 물품에도 중요한 분류기준이 된다.  
⑤ 볼트블랭크는 봉을 단조(프레스)하여 만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용융된 쇳물을 주형에 부어 만들거나 쇳가루를 주형에 넣어 고압과 고온에서 소결하는 방법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 때마다 원재료(예: 잉곳이나 쇳가루)는 달라진다.

〈 [그림1] 볼트(나선 가공된 것) 가공단계별 물품의 품목번호 〉

철강으로 만든 봉 [제7214호]	볼트블랭크 <sup>⑤</sup> [제7318.15호]	완성된 볼트 [제7318.15호]
		

〈 [그림2] 골프채헤드 가공단계별 물품의 품목번호 〉

제재목 [제4407호]	골프채헤드블랭크 [제9506.39호]	완성된 골프채헤드 [제9506.39호]
		

〈 [그림3] 면도날 가공단계별 물품의 품목번호 〉

스테인리스강 스트립(strip) [제7220호]	스트립모양의 면도날 블랭크 [제8212호]	완성된 면도날 [제8212호]
		

〈[그림4] 페트병 가공단계별 물품의 품목번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PET) (제3907호)	페트병블랭크 (제3923.30호)	완성된 페트병 (제3923.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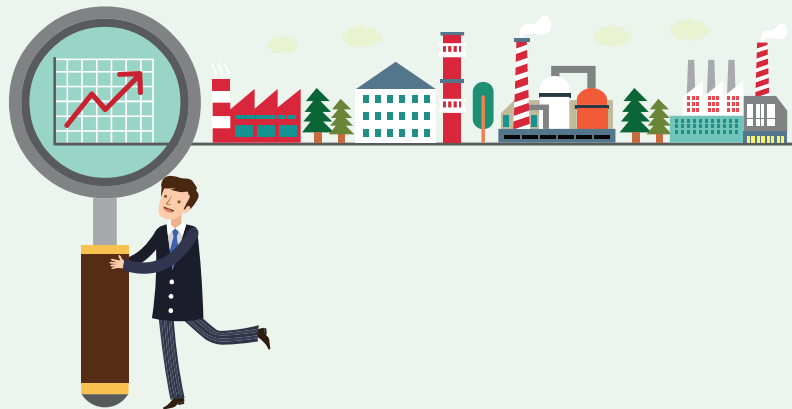
참고적으로 이 글과 관련된 물품의 주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을 나타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관련 물품의 주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물품명 (HS 코드)	FTA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PSR)	블랭크 적용여부
페트병 (3923.30)	한-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중	4단위 세번변경기준	×
볼트 (7318.15)	한-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1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한-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중	4단위 세번변경기준	×

크랭크샤프트 (8483.10)	한-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중	6단위 세번변경기준	×
골프채부분품 (헤드 포함) (9506.39)	한-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기 위해 거칠게 성형한 블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다.	○
	한-중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표1에서 “블랭크 적용 여부”란 세번 변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말한다. 같은 물품이라도 협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크랭크샤프트는 블랭크(제8483.10호)를 수입하여 완성품(제8483.10호)을 만들면 한-미 FTA나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물품이 될 수 없으나, 한-EU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에 부합되면 원산지물품이 된다. 볼트는 세 개 FTA협정 모두 세번변경기준(CTH)만이 적용된다.



## 2. 블랭크(반가공품) 분류사례

블랭크에 해당되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한 WCO 품목분류위원회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1) 크랭크샤프트 폐쇄 단조물

#### ① 물품설명

반가공품(blank) 상태의 철강으로 만든 크랭크샤프트 폐쇄 단조물이다. 단조공정외의 추가적인 가공이나 성형은 되어있지 않다.

#### ② 사례해설

WCO 제27차 HS 위원회에서 반가공품(blank) 상태의 철강으로 만든 크랭크샤프트를 통칙 제2 호가목과 제15부 주 제1호바목을 적용하여 제8483.10호로 분류한다.

참고적으로 HS 해설서 제7326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단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블랭크로 볼 수 없다면 철강의 단조물에 해당되어 제7326호로 분류한다.

#### < [그림5] 크랭크샤프트블랭크<sup>®</sup> >



⑥ 이 그림은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 사례물품과는 다른 것이다.

⑦ 이 그림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한 것이며 실제 사례물품과는 동일한 것은 아니다.

## [사례2] 외과용 바늘 블랭크

### ① 물품설명

길이 44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관(tube)으로 되어 있으며, 내측 직경 1.3밀리미터와 외측 직경 0.9밀리미터인 원형 횡단면을 갖고 있다. 한 끝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또 다른 한 쪽 끝은 예각으로 절단되어 있다. 후자의 끝 부분은 날카로운 뾰족한 족이 형성되게 서로 교차하는 두 개의 평면상에 세워져 있다.

〈[그림6] 외과용 바늘 블랭크<sup>㉞</sup>〉



###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외과용 바늘의 블랭크이므로 통칙 제2호가목을 적용하여 제9018.32호로 결정한 사례이다.

## 3. 블랭크(반가공품) 적용대상 물품

블랭크는 통칙 제2호가목을 적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제1부(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부터 제6부(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까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제7부(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부터 제21부(예술품·수집품·골동품<sup>㉟</sup>)까지로 적용되는데, 그림에도 이 범위에 속한 물품 모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블랭크는 원재료를 주형틀에 부어 만들거나(주조), 재료를 불에 달궈 두들기거나(단조) 또는 성형(조각을 포함한다)이나 틀에 맞춰 찍어내는 방법(stamping)으로 만든다.

㉞ 이 그림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한 것이며 실제 사례물품과는 동일한 것은 아니다.

㉟ 영문의 규정은 없지만, 예술가가 직접 만든 블랭크 상태의 조각품이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공에 적합한 플라스틱(제39류)·고무(제40류)·목재(제44류)·돌(제25류)·유리(제70류)·귀금속(제71류)과 비금속(非金屬)(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3류까지)·동물의 뿔이나 뼈(제5류)·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재료(제14류나 제25류) 등이 주로 이용된다.

#### 4. 블랭크(반가공품) 분류의 쟁점사항

블랭크를 통칙 제2호가목을 적용하여 분류하는 경우에 가장 큰 쟁점사항은 “완성된 제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HS 해설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유익한 내용의 몇 가지의 사례를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9)</sup>.

〈 [표2] 블랭크의 적용 범위와 기준(HS 해설서) 〉

대상물품	범위와 기준
제7207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p>제7207호의 반제품(semi-finished products)은 외부 모양이 거칠고 치수에 대한 공차가 많은 반제품으로 블록이나 잉곳을 파워 해머를 사용하거나 단조용 프레스에 의하여 제조된다. 이 경우 최종 제품을 만들 때 필요 이상의 웨이스트가 생기지 않도록 최종 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조잡한 형상을 만든다.</p> <p>그러나 단조·프레스·선반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더 가공하여야만 최종 제품의 형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물품만을 분류한다.</p> <p>예를 들면 잉곳이 평평한 지그재그 형상으로 거칠게(roughly) 단조되고 선박용 크랭크샤프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가공되어야만 하는 것은 제7207호로 분류하지만, 최종 가공(final machining)에 알맞도록 단조된 크랭크샤프트는 제외된다. 주형 사이를 단조함으로써 제조되는 드롭 단조품과 프레스 물품은 최종 가공만을 요하는 물품이므로 이 호에서 제외된다.<sup>10)</sup></p>

<p>제7325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p>	<p>제7325호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조물(예: 기계류나 기계식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p>
<p>제7326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p>	<p>제7326호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단조물(예: 기계류나 기계식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p>
<p>제8301호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 이하 생략, 이들 물품에 사용하는 비금속으로 만든 열쇠)</p>	<p>(B)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의 비금속으로 만든 열쇠(완성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거칠게 주조된 블랭크·단조된 블랭크나 타발(stamped)된 블랭크를 포함한다)</p>
<p>제16부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부분품, 이하 생략)</p>	<p>기계류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로 분류한다. 다만, 철강으로 만든 조단조품(rough forging)<sup>㉑</sup>은 제7207호로 분류한다.</p>
<p>제94류 (가구 등)</p>	<p>부분품 제94류에는 오직 제9401호부터 제9403호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에는 거칠게 만든 것(rough)인지에 상관없으나 형상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p>

②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블랭크가 어떤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특성을 따져 분류할 때에는 각 물품의 생산방법이나 공정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각 물품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③ 이 경우는 주로 제8483호로 분류한다(HS 해설서 제8483호 제외규정 (a)항 참조)

④ 블랭크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블랭크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제94류도 이와 같다.

제9606호 (단추와 단추블랭크)	(3) 단추블랭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㉔ 성형으로 만든 것으로서 아직 단추로 사용할 수 없는 단추블랭크: 이 물품은 보통 깎아 다듬고 구멍을 뚫고 연마하는 공정이 필요하며 단추제조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㉕ 톱(top)과 베이스(base)의 두 개의 부분품으로 구성되며, 양쪽이 꼭 들어 맞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스탬프된(stamped) 금속블랭크  ㉖ 자개(패각)·목재 등으로 된 블랭크로서 단추제조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가공된 것(예: 한 면이나 양면을 원형 중공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하고 가장자리에 테를 만들고 연마하거나 구멍을 뚫은 것). 반면에 단지 톱으로 절단하고 연마한 디스크의 것으로서 그 이상 가공을 하지 않은 원반상의 것은 단추 블랭크로 취급하지 않고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	---

앞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다음 그림7은 제7207호나 제7325호(또는 제7326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아니고 제8483호로 분류되는 크랭크샤프트의 블랭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블랭크의 분류 사례1, 크랭크샤프트 폐쇄 단조물 참조).

그 이유는 완성된 크랭크샤프트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춘 것으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 가공(주 공정은 선반이다) 외에 단조나 프레스와 같은 가공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7] 크랭크샤프트블랭크와 완성된 크랭크샤프트〉



다음 그림8의 좌측 물품도 통칙 제2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 블랭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분류사례가 없어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sup>㉔</sup>, 표면에 골프채헤드의 모양을 선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골프채헤드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만은 명백하다. 만약 블랭크에 해당되면 제9506호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4421호(그 밖의 목제품)로 분류한다.

〈[그림8] 골프채헤드블랭크와 완성된 골프채 헤드〉



㉔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면 비록 완성된 골프채헤드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은 있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절단면 모두가 평면으로 되어 있는 점과 정확한 치수에 맞춰 어느 정도까지는 기하학적으로 가공하여야만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의견이다. 그럼에도 한-EU 제9506.3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거칠게 성형한 블록상(그림8의 좌측 물품과의 차이점을 제시하기가 어렵다)'의 것도 블랭크에 해당되어 같은 소호로 분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 5. 결론

통칙 제2호가목을 적용하여 미완성된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많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 규정의 추상성과 함께 같은 물품이라도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할 때에 특정 국가의 상관습이나 결정 주체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블랭크는 통칙 제2호가목과 HS 해설서의 규정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니지만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춘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면 완성된 물품과 같은 호로 분류한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HS 해설서의 각론이나 세계관세기구(WCO)의 사례 등을 살펴보면 블랭크를 비교적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필자가 생각하는 그 이유와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블랭크는 반제품(semi-manufacture)과 제품(부분품을 포함한다)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미완성된 물품으로 볼 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품목분류의 원리와 좀 더 부합되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는 통칙 제3호다목<sup>③</sup>을 근거로 한다. 당연히 관세율표의 분류체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반제품보다는 제품이 뒤의 번호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반제품은 일정한 모양에 따라 분류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특정 모양으로 가공하면 반제품으로 분류될 여지가 없다. 반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면 각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마지막 호가 대안이 된다. 이러한 호로는 제3926호(플라스틱)·제4016호와 제4017호(고무)·제4421호(목재)·제6815호(돌)·제7020호(유리)·제7325호와 제7326호(철강) 등이다.

③ 물론 통칙 제3호다목은 통칙 제3호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과 나뉘(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에 따라 분류한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 호에는 최종 제품(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는 것이지 중간성형품을 분류하는 것은 아니므로 블랭크로 분류할 수 없으면 몰라도 이들 호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리고 제84류부터 제96류까지에 속한 부분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구성 재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분류하는데, 만약 블랭크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부분품으로 분류될 것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끝으로 블랭크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그렇게 되면 상호 교류증진이라는 FTA협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의견이 부딪치게 된다. 이때에는 법의 제정목적이나 법적 용어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해석하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런 관점에서 FTA협정의 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주석<sup>9</sup>와 같이 블랭크를 해석하고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는 FTA협정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고 개인의 견해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만 적용되는 물품으로 블랭크 판정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마다 분류견해가 다를 수 있고, 추후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면 사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현명한 담당자가 취할 조치이다.

※ 이 글에서 제시한 의견은 관세청이나 필자가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